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17. 3. 7.

복지도시위원회

## **1. 심사경과**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3.2. 이필례 의원 외11명

나. 회부일자 : 2017.3.2.

다. 상정일자 :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3.7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**2. 제안설명요지**

제안설명자 : 이필례 의원

### **가. 제안이유**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·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### **나. 주요내용**

- 1)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2)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3)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4) 비용의 보조와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함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2017년3월2일 아필례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조례안은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등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관리 ·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·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○ 장애인 관람석을 규정한 현행 법령에 좌석비율에 대한 설치규정은 있으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통상 대부분의 장애인관람석은 출입구나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공연장의 맨 뒷자리 등에 위치해 있어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음. 따라서 공연장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지정하고,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· 피난 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

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최적의 좋은 위치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문화 및 접근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